

# 2024년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4.(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1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754건(안건번호 제2024-6118호~제2024-715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6118호~6120호(순번 1번~3번)는 카페에 게임 홍보영상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 자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불법복제물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4-6121호~6127호(순번 4번~10번)는 블로그와 카페에 방송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128호~6138호(순번 11번~21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6139호~6142호(순번 22번~25번)는 웹하드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69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박현주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E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입. 해당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동일한 제목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시리즈물로 제작된 영상으로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초 제공되었고, 한국에서는 공식홈페이지상의 영상은 재생되지 않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영상물은 게임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무료로 공개 중인 것으로, 게임이나 해당 게임의 원저작물인 만화 또는 애니메이션과는 별개의 콘텐츠임. 권리자가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자유로운 복제·전송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으로 제작되어 무료 공개중인 홍보용 영상이 원저작물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홍보영상 자체의 시장을 대체하거나 불법복제물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 제도에 의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1번~3번은 게임 홍보용 영상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서, 우리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 및 시장 대체성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10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와 카페 게시물을 통하여 영상물을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29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4번~10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1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번~2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이며, 총 12건임.

(순번 1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PDF 파일을 판매하고 있음. PDF 파일은 이메일 또는 채팅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C, D, E 위원: 순번 11번 내지 21번은 출판물의 PDF 파일의 판

때 게시글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 권고 대상으로 충족하므로 가결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2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25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이며, 총 4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검토보고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2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6번~104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699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출판, 만화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04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마스터스 오브 디 에어'의 약 53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26.에 방영 시작한 미국 드라마임.  
 (방송 '기금조'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84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기금조'의 약 43분 전체분량을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2024. 1. 18.~2024. 2. 13.까지 방영한 중국 드라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박현주 전문위원: 순번 26번~1040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

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6번~1040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6118호~6120호(순번 1번~3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6121호~6127호(순번 4번~1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6128호~6138호(순번 11번~21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6139호~6142호(순번 22번~2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4-6143호~7157호(순번 26번~1040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1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3. 11.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최태경

위원 홍승기